



제 426회 국회 (임 시 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헌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246호)

2025. 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 재 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봉사동물의 사육 · 관리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2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이현승의원 등 11인

나. 제 안 일 : 2025. 3. 21.

다. 회 부 일 : 2025. 3.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한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봉사동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봉사동물은 곳곳에서 우리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은퇴 후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지원센터 등을 통한 체계적인 보호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군견 등 봉사동물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가 부재하여 봉사동물을 운용하는 각 기관에서는 사료 확보 등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안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봉사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를 위하여 소유자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퇴역 봉사동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통해 체계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봉사동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봉사동물의 사육·관리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개정안은 봉사동물의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봉사동물이 적정한 사육·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퇴역한 봉사동물의 사육·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퇴역 봉사동물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현행	개정안
<신설>	제16조의2(봉사동물에 대한 보호·관리) ① 봉사동물의 소유자등은 봉사동물이 적정한 사육·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봉사동물이 적정한 사육·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소유자등에게 ¹⁾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제16조의3(퇴역 봉사동물 지원센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퇴역한 봉사동물의 사육·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퇴역 봉사동물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u>퇴역 봉사동물의 사육·관리 지원 사업</u> 2. <u>퇴역 봉사동물의 진료 및 치료 지원 사업</u> 3. 그 밖에 사육·관리²⁾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④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현행법은 봉사동물을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한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로 규정하고,³⁾

현행법 시행령은 그 범위를 장애인 보조견, 국방부·농림축산식품부

1) 자구 정리 필요 사항: “소유자등에게” → “봉사동물의 소유자등에게”

2) 자구 정리 필요 사항: “사육·관리” → “퇴역 봉사동물의 사육·관리 지원”

3)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봉사동물”이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한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 관세청 · 국토교통부 · 경찰청 · 해양경찰청에서 수색 · 탐지 등을 위해 이용하는 동물, 소방청 119구조견으로 구체화하고 있으며,⁴⁾

2024년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봉사동물은 약 1,360마리로, 이 중 훈련 · 활동 중인 동물이 약 1,060마리, 은퇴한 동물이 약 300마리⁵⁾로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봉사동물은 고도의 훈련을 통해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사육 과정에서도 적절한 사육 · 관리가 필요하며, 은퇴한 봉사동물은 대부분 대형견으로 노령 또는 질병으로 인해 민간 입양 시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있음.⁶⁾⁷⁾

이에 개정안은 봉사동물의 보호 · 관리에 관한 소유자등의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퇴역 봉사동물의 사육 ·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

4)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봉사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2. 국방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수색 · 경계 · 추적 · 탐지 등을 위해 이용하는 동물

3. 농림축산식품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관세청(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등에서 각종 물질의 탐지 등을 위해 이용하는 동물

4. 다음 각 목의 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수색 · 탐지 등을 위해 이용하는 동물

가. 국토교통부

나. 경찰청

다. 해양경찰청

5. 소방청(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효율적인 구조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119구조견

5)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조사한 ‘봉사동물’은 은퇴 이후 2024년에 입양된 동물은 포함하고 있으나, 2024년 이전에 입양된 동물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현행법에 따른 은퇴한(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봉사한) ‘봉사동물’은 조사 결과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됨.

6)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국가봉사동물의 행복한 견생 2막, 대한민국이 함께합니다.」, 2024. 11. 25.

7) 경인일보, “국가에 헌신한 특수목적견, 은퇴 후 남은 견생 아프기만”, 2024.6.11.

URL: <https://www.kyeongin.com/article/1695258>

려는 것으로,

사회와 국가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봉사동물이 적절한 보호와 관리를 받도록 함으로써 봉사동물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봉사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한 개정 취지에 동의하나,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방안 등 봉사동물의 보호·관리체계에 대하여는 관계 기관 및 전문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및 유사 사례 검토 등을 거쳐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며,⁸⁾⁹⁾

기획재정부는 안 제16조의2에 대하여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할 때 민간 봉사동물에 대한 지원은 민간 영역에서 자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안 제16조의3에 대하여 은퇴한 봉사동물의 사회화 및 입양 등은 운용기관에서 책임지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따라서 개정안에 대하여는 봉사동물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확대 필요성, 관계 기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8)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은퇴 봉사동물의 통합 보호·관리 체계 및 지원센터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하기 위하여 “봉사동물 생애주기별 적정관리 실태조사” 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연구용역 결과는 2025년 10월말에 도출될 예정임.

9) 그 밖에 ‘퇴역’이라는 용어는 주로 군인을 대상으로 쓰이고 있으므로, ‘은퇴’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424